

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제1차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안내

(대학지원팀)

□ 관련 근거(참고 기준)
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'24.4.1.)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'24.4.1.)
- '25~'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(일반재정지원) 기본계획 안내(교육부 지역 혁신대학지원과 '25.3.2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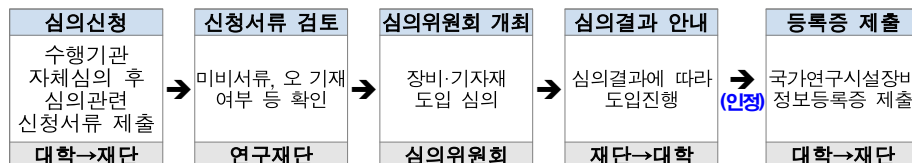
□ 심의개요

심의대상	심의기관	신청방법
3천만원 이상~	한국연구재단	재단에서 안내하는 별도 안내에 따라 재단으로 신청·심의 진행

-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(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)로 도입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에 적용

□ 심의체계(심의기관 : 한국연구재단)

- (심의대상) 3천만원 이상의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
 - ※ 부가가치세, 도입·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
 - ※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 대상이며,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
- (심의시기) 격월 심의 진행 및 결과 안내('25.6 ~ 12월 ; 총 4차)
 - 심의 신청은 심의월 전월 말일*까지 접수
 - * 단, 제1차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도입 심의위원회(6월 말 개최 예정) 심의의 경우 6월 25일(수)까지 신청
 - ※ 사업 기간 내 장비 및 기자재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심의 추진
- (심의절차) 장비 도입 전 심의 절차 진행 원칙



- [예외절차] 사후심의 : 불가피한 사정*에 한하여 사유서 및 관련 내부절차와 서류를 완비**하고, 심의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의무이행 전제하에 가능

* 국가사업(정책)과 연계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, 긴급한 해외 공동연구 추진 등

** 대학 내부 장비·기자재 도입 심의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하며, 중복성 및 예산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 필수 제출

[예외절차] 사후심의

- 대학은 해당 자수의 심의신청 안내 공문 일자 이전에 부득이하게 先 도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을 경우, 해당 내용을 사유서 등과 함께 재단에 제출하고, 위원은 검토 의견 제공*
- * 검토 의견 조치 결과는 추후 장비정보등록증 제출 시 함께 제출
- 동 절차는 대학 책임하에 진행하고, 사후심의 결과 '불인정'될 경우 교비 대체 등 후속조치 필수(사업비 집행 불가)
- ※ 사후심의 신청 대학은 추후 사업비 정밀정산 대상 등이 될 수 있으며,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장비에 한하여 사후심의 실시

- (신청서류) 심의요청서, 사업계획서, 비교견적서, (해당 시)사후심의 요청 사유서

<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>

1. 신청서류 검토결과 양식의 오 기재 또는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실험·실습장비·기자재의 요구 성능, 상세 사양, 견적금액 등을 서식에 맞춰 **구체적으로 작성**
2. 2개 이상의 실험·실습장비·기자재를 신청하는 경우 **장비별로 분리**하여 신청서류 제출

- ① 심의요청서([별첨1] 서식 참조)
 - ※ 1억원 이상 장비 및 기자재 심의 신청 시, 신청 장비(기자재) 중복성 자체 검토 서식 제출 포함
- ② 사업계획서 내 관련 내용
 - ※ 실험·실습장비·기자재 도입과 관련한 부분(사업내용, 예산 등)을 발췌하여 제출
 - ※ 사업계획서에 없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및 일정상 사업계획서가 미확정인 경우, 장비와 관련하여 개최한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. 장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자료에 포함하고, 추후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
- ③ 비교견적서(체적인 모델명, 사양, 금액 등 표시)
 - ※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되, 심의위원 요청 시 3개 이상 제출 (단,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(자유양식) 제출, 외산장비가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 '독점공급계약서' 제출)
- ④ (해당 시)사후심의 요청 사유서([별첨2] 서식 참조)
 - ※ 중복성 및 예산 규모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부 결재문구과 과정의 비교견적서 자료 포함 및 대학 내부 장비·기자재 도입 내부 사전 심의 결과 자료(안건 및 의결자료) 함께 제출

- (신청방법)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서류 업로드
(<https://uniall.nrf.re.kr/ums>)

※ 신청 세부 방법은 [별첨]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조

□ 심의방법

- (심의기준) 총 5개 구분의 기준으로 심의, “인정/불인정” 결정

구분	심의항목	심의내용
1	사업과의 부합성	-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(기자재)가 사업과 부합하는가? -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장비(기자재)의 도입시기가 적정한가? -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(기자재)인가? - 정부 예산의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(기자재)인가?
2	장비(기자재) 중복성	- 기 구축된 장비(기자재)와 중복성이 낮은 장비(기자재)인가? - 구축하려는 장비(기자재)가 해당지역 및 동일기관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장비(기자재)인가? - 기존에 동일·유사한 장비(기자재)가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?
3	장비(기자재) 활용성	-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(기자재)인가? -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(기자재)인가? -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도(율)를 제시한 장비(기자재)인가? - 사업 종료 후의 운영(활용) 계획은 합리적이고, 타당한가?
4	장비(기자재) 적정성	- 사업(연구)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(사양, 수량) 및 성능을 보유한 장비(기자재)인가? - 장비(기자재)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(책정)되지 않았는가? - 외산 장비(기자재) 구매요청 시, 사전에 국산 장비(기자재) 구매/제작을 검토한 장비(기자재)인가?
5	장비(기자재) 운영 계획성	- 장비(기자재)의 구축과 운영,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? - 장비(기자재)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(안전기준 검토여부 포함),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계획이 제시되었는가? - 사업 종료 후의 운영(활용) 계획은 합리적이고, 타당한가?

- (심의결과) “인정/불인정” 두 가지 구분으로 결정

구분	판정기준	심의결과
인정*	실험·실습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, 제시한 구축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도입
불인정	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험·실습 시설장비나 심의대상이 아닌 실험·실습 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등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	도입 불가

* '인정' 결과에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대학은 해당 의견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장비 도입 추진

- (후속조치)

- 도입 인정 : 심의결과에 따라 취득한 장비 및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 내 장비활용종합포털(ZEUS)에 장비 및 기자재 등록(심의장비명, 심의번호, 심의일자 등 포함)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
- 도입 불인정 : 신청한 실험·실습장비·기자재 도입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집행

[사후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]

- 도입 인정 : 즉시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 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
- 도입 불인정 : 도입한 내역이 불인정 됨에 따라 기집행한 사업비는 교비 등으로 계정 대체, 사업비 집행 불가